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동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붙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가이드라인.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대기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대구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 광주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 대전광역시장(미세먼지대응과장), 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 충청북도지사(기후대기과장), 충청남도지사(기후환경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자연생태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기후생태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기후대기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환경사무관	함지범	서기관	김경석	과장	유승광	정책관	2019.11.8. 금한승
-------	------------	-----	------------	----	------------	-----	--------------------------

협조자

시행 대기환경정책과-2385 (2019. 11. 8.)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6동 환경부 505호 대기미/ http://me.go.kr
래전략과

전화번호 044-201-6897 팩스번호 044-201-6895 / jibeomham@me.go.kr / 대국민 공개